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람	기 판 의 장

공·보

제 698 호 2011. 7. 14(목)

공 고

○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466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 2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문화홍보과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466호

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7월 14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정 장**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****1. 개정취지**

- 주민참여와 신설과 시설재난관리과 폐지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직급·직번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**가. 직급·직렬별 정원조정****1) 정원조정**

- 7급 : 128명 → 131명(증 3명)
 - 세 무 : 7명 → 8명(증 1명)
 - 녹 지 : 2명 → 3명(증 1명)
 - 시 설 : 17명 → 18명(증 1명)
※ 시설(토목) 증 1명
- 8급 : 131명 → 132명(증 1명)
 - 세 무 : 9명 → 8명(감 1명)
 - 전 산 : 3명 → 4명(증 1명)
 - 녹 지 : 4명 → 3명(감 1명)
 - 시 설 : 21명 → 21명
※ 시설(토목) 감 1명, 시설(지적) 증 1명
 - 사 서 : 1명 → 3명(증 2명)

- 9급 : 51명 → 47명(감 4명)
 - 진 산 : 1명 → 0명(감 1명)
 - 시 설 : 5명 → 4명(감 1명)
 - ※ 시설(지적) 감 1명
 - 사 서 : 4명 → 2명(감 2명)

2) 직렬명칭 변경

- 기동직 : 방송통신직 → 농신직

3. 의견제출

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기획감사실장)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(☎ 219-7202, fax 219-721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설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타

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우리구 기획감사실에 비치하고 예고기간 동안 공시 합니다.